고용노동부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13.(금) 09:00 (2026. 11. 13.(금) 석간)

「작업시간대 조정 집중 지도」
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

- **한랭질환 예방을** 위한 **한파 안전 대책기간**('26.11.15.~'27.3.15.) **운영**
 - 환경미화·건설·물류 등 **새벽 옥외작업 업종 중심 집중 지도**
- 생활폐기물·농축산업 **지방정부 합동 집중점검 확대**(200개소→400개소)

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는 올겨울 한파 대비 **노동자**의 **안전**과 **건강**을 보호하기 위해 **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**('26.11.15.~'27.3.15.) 동안 **「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」**을 추진한다.

기상청에 따르면, 올겨울은 기온 **변동성**이 **크고**, 특히 **1월**에는 **찬 공기가 유입**되면서 **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**이 있다.

이에,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한파 특보 발령 시 **새벽 시간대 작업시간대 조정**, **따뜻한 쉼터 제공** 등 **「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*」**을 중심으로 노동자 **한랭질환 예방**에 **총력 대응**할 계획이다.

* ❶따뜻한 옷, ❷따뜻한 쉼터(휴식), ❸따뜻한 물, ❹작업시간대 조정, ❺119 신고

또한, 권고사항 중심으로 운영되는 「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」을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**사업주**의 **보건조치**로 **의무화**하기 위해 **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개정**도 **추진**하고 있다('26.7.14~'26.8.24. 입법예고)

고용노동부의 **「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」**의 **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첫째, 한파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개소를 집중 관리한다.

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**비상대응반**을 **운영**하고, **'심각'** 단계에서는 **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관**으로 격상하여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**「한파 특별 대응기간」**을 운영한다.

한랭질환 산재 다수 발생 업종의 **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개소**를 **선정**하여 **지방노동관서 전담 감독관**과 **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담자**가 한파특보 발령 전 **「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」**이 담긴 **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북**을 **배포**하고,

한파특보가 발령되면 **중대재해 사이렌**(9만 명)과 **산업안전 전광판**(40개) 등을 통해 **기상 상황**과 **재해사례 및 예방 조치** 내용을 **신속히 전파**한다.

둘째, 한파 전 자율점검과 한파기간 점검·감독을 강화한다.

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한랭질환 위험요인과 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 **자율점검 기간**(11.17.~30.)을 운영하여 한랭질환 대응책 마련 및 개선을 유도하고, **한파 취약시기**(12월~2월)에는 **「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」** 준수 여부를 **점검**(약 4천개소)한다.

특히, 옥외작업이 많아 한랭질환에 매우 취약한 **건설업,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업, 농축산업**에 대한 집중점검을 지난해 200개소에서 **600개소**로 **확대**한다.

건설현장(200개소)은 새벽 **작업 시간대 조정** 여부를 **집중 지도**하고, 질식, 화재·폭발, 떨어짐·무너짐 등 **겨울철 주요 위험요인**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**병행 점검**한다. **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사업장**(200개)과 **농·축산업 외국인 고용사업장**(200개소)은 **지방정부**와 함께 **작업 시간대 조정**과 **숙소 난방·소방 시설**을 중점 확인한다.

셋째, 건설·환경미화·이주·이동노동자 등 한파 취약 노동자 지원을 강화한다.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으로 '**한파**'가 **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로 명시**(10.27일 시행)됨에 따라 **공공발주기관**과 **건설업체**에게 한파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 **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**하고, **산업안전보건관리비**를 활용해 쉼터 설치, 난방기기 임대, 방한장갑·발열조끼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**설비·용품 구매**가 가능함을 함께 안내한다.

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, 청소, 건물관리 등 새벽 옥외작업이 많은 **환경미화 노동자** 등은 **한파특보 발령** 시 **작업시간대 조정** 지도와 함께 장갑·핫팩·귀덮개로 구성된 **윔키트**(14,300세트)를 **지원**한다.

언어적 차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정보 제공이 어려운 **이주노동자**를 위해 **고용 사업장**(약 1만개소), **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취업교육기관**을 대상으로 **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북 외국어 번역본**(18개 언어)을 배포한다.

이동노동자를 위해서는 지난 5월 배달플랫폼 8개사와 체결한 **「안전하고 건강한 배달일터조성을 위한 협약」**에 따라 **한파** 발생 시 **온열용품 지급·휴식 안내 등 한랭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**를 **점검**하고, 전국이동노동자 쉼터 152개소 정보를 배달 앱과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제공한다. 이와 함께 **편의점, 이륜차 정비소 등 이동노동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쉼터**를 **확대**한다.

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"올겨울은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**갑작스러운 강추위가 찾아올 수** 있고, **새벽 시간대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**지는 만큼 **방심은 금물**"이라며, "**사업장**에서는 **한파특보가 발령**되면 추운 새벽 시간대를 피해 **작업시간을 조정**하고, 노동자가 **따뜻한 쉼터**에서 **충분히 쉴 수** 있도록 **「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」을 꼭 지켜** 달라"라고 당부했다.

이어 "노동부도 지**방정부, 배달플랫폼사 등과 함께** 현장의 **한파 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**하고, 한파에 취약한 **노동자를 위해 필요한 지원**을 아끼지 않겠다"라고 강조했다.

붙임 1. '26년 「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」 주요 내용
2. 겨울철 한파로 인한 「한랭질환 예방수칙」
3. 한랭질환 예방 및 휴게시설 사전점검표

담당 부서	산업보건보상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	책임자	과 장	유종호 (044-202-8890)
		담당자	사무관	박현건 (044-202-8891)
			주무관	홍남교 (044-202-887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1 ’26년「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」주요 내용

1 추진 배경

○ **한파 재난 방지**를 위한 **범정부 차원 대책기간**('25.11.15~'26.3.15) **운영**, 우리부는 노동자 **한랭질환 예방**을 위한 **건강보호 대책** 추진

> ❖ **새벽 옥외작업이 많은 환경미화·건설, 물류·택배 등 한파 취약업종 중심으로 작업시간대 조정 등「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」준수 지도**
>
> ❖ **이주노동자 대상「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」번역본 집중 배포,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외국인 고용 사업장 및 폐기물 수집 사업장 합동점검**

2 기후전망 및 산재현황

○ **(기후전망)** 올해 겨울 **평균기온**은 **평년**('91~'20년)보다 **높을 것**으로 전망, 최근 기후 변화로 **겨울철 기온 상승, 한파일수는 감소 추세**

* 아침(03~09시) 최저기온 영하 12도 이하인 날의 수

○ **(산업재해) 최근 5년간** 한파로 인한 **한랭질환 산재자 27명***(사망자 없음)

* ▲('21~'22) 5명 ▲('22~'23) 11명 ▲('23~'24) 2명 ▲('24~'25) 5명 ▲('25~'26) 4명

- **(업종별)** 전체 27명 중 **시설관리업**(7명), **운수·창고업**(6명), **건설업**(5명), **도소매·숙박업**(4명), **제조업**(4명), **기타업종**(1명) 順

- **(규모별)** 50인 미만 **소규모 사업장***에서 **다수 발생**(17명, 63.0%)

* ▲5인 미만 : 7명(25.9%) ▲5~20인 미만 : 6명(22.2%), ▲20~50인 미만 4명(14.8%)

3 주요 추진내용

1 한파 대응 체계 구축 및 관리

○ **(비상대응반)**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에 대응하고, **한랭질환 산재 예방** 등을 위해 **단계별 비상대응반***을 구성·운영

* **(관심단계)** 비상대응반 구성 → **(주의·경계)** 지방관서·안전공단(부서장) → **(심각단계)** 기관장 격상

○ **(한파 취약사업장)** 지방관서별로 **한랭질환** 산재 **다발 업종**을 대상으로 **취약사업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(3만개)**

→ **중대재해사이렌**(약 9만명)으로 ❶**한파특보**(주의보, 경보), ❷「**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**」, ❸**한파로 인한 재해사례 전파 등 중점관리**

2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 지도·점검

○ **(자율개선)** 한파 **취약사업장 3만여 개소 대상** 한랭질환 위험요인 및 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 **자율점검**('26.11.17.~11.30.) **실시**

○ **(병행점검) 한파 취약시기**(12월~2월) 모든 점검·감독(약 4천 개소) 시 「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」 **점검**, 한파특보 시 **기관장 주 1회 현장 방문**

○ **(취약업종 집중점검) 건설업, 생활폐기물 및 농축산업** 지방정부 **합동점검** → 작업시간대 조정, 숙소난방·소방시설 및 휴게시설 확인

* 생활폐기물 및 농축산업 지방정부 각 200개소, 건설업 200개소 집중점검

3 한파 취약노동자 지원 강화

○ **(건설노동자)** 발주기관,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파로 인한 **공사기간 연장 절차**(법률개정, '26.10.27. 시행), 및 쉼터, 난방기기 등 한랭질환 예방설비 소요비용의 **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안내**

*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 기술지원(300개소),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(600개소) 병행

○ **(환경미화노동자) 옥외작업 작업시간대 조정 지도**, 민감군 관리 **기술지원**(1,000개소), 한랭질환 예방물품 **14,300세트 지원**

○ **(이주노동자) 외국인 고용 사업장,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취업교육기관** 대상 **한랭질환 예방수칙 외국어본**(18개 언어) **배포**

○ **(이동노동자) 배달플랫폼 8개사 협약**('26.5.15.) **이행점검, 쉼터**(152개소) **정보 제공, 생활밀착형 쉼터**(편의점·이륜차 정비소 등) **확대**

붙임 2 겨울철 한파로 인한 「한랭질환 예방수칙」

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



6개 외국어 번역본

- 한파란 근로자에게 저체온증·동상·동창 및 그 밖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의 기상현상을 말합니다.
-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, 동상, 동창 등의 한랭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.

"한파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 **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**을 준수해야 합니다."

한파특보 발표기준

한파주의보	✷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℃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✷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℃ 이상 하강하여 3℃ 이하 예상될 때 등
한파경보	✷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℃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✷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℃ 이상 하강하여 3℃ 이하 예상될 때 등

※ 세부사항은 기상청 시행령 [별표1] 특보기준 참고

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

따뜻한 옷	✷ 보온 기능이 있는 의류, 장갑, 신발 착용 및 지도 ✷ 머리와 귀를 덮는 모자 등을 착용 및 지도 *물이나 땀에 젖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여분의 양말 준비
따뜻한 쉼터(휴식)	✷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따뜻한 쉼터 설치 *쉼터에서의 화재 및 유해가스 중독 등 예방조치 실시 ✷ 한파특보 발령 시 적절한 휴식 부여
따뜻한 물	✷ 깨끗하고 따뜻한 물 제공
작업시간대 조정	✷ 한파 특보 발령 시 추운 시간대(오전 3시~9시)를 피해 작업시간대 조정 한파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작업시간 단축 한파경보 추운시간대(새벽) 옥외 작업중지 또는 최소화
119 신고	✷ 한랭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9신고 ✷ 한랭질환 증상 및 예방조치, 응급조치 요령을 미리 알릴 것

OPEN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질병관리청 2026-산업보건실-810

한랭질환 민감군 관리

* 한랭질환 민감군 모니터링 및 주기적으로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 부여
* 한파특보 시 한랭질환 **민감군** 및 **중작업** 수행 노동자 → 추운 시간대(새벽) 옥외작업 최소화

민감군 고혈압, 당뇨, 뇌심혈관질환, 갑상선 기능저하, 하약체질, 고령자, 신규 배치자 등이 해당

중작업 열량소비가 많은 삽·망치·톱·곡괭이·도끼 등을 이용한 형틀·철근·타설 작업 등 전신을 움직이는 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작업 등

한랭질환별 증상 및 응급조치

한랭질환	증상	응급조치 요령
 저체온증	* 심부체온이 35℃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 * 몸 떨림, 피로감, 착란, 어눌한 말투, 기억상실, 졸림 * (경증) 인지장애 * (중증도) 의식소실, 부정맥, 호흡저하 * (중증) 혼수, 심장정지	* 체온 35℃ 미만 / 의식이 없는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 * 119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또는 의료기관으로 갈 수 없는 경우, 다음과 같이 조치하기 - 가능한 빨리 환자를 따뜻한 장소로 이동시키기 -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 등으로 감싸기
 동상	* 저온에 노출되어 피부·피하조직이 동결·손상된 상태 * 피부색이 흰색이나 누런 회색으로 변함 * 피부 촉감이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짐 * 피부감각이 저하되어 무감각해짐	*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기 *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기 - 신속히 따뜻한 장소로 이동시키기 - 동상 부위를 따뜻한 물에 20~40분간 담그기
 동창	* 피부가 붉게 변하고 가려움 * 심한 경우 물혈·물집·궤양 등 발생	* 언 부위를 따뜻한 물에 담가 따뜻하게 하기 * 동창 부위를 살살 마사지하여 혈액순환을 유도하고 긁지 않기 * 동창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보습하기
 침족병 / 참수병	* 가렵거나 무감각하고 저린듯한 통증 * 피부가 부어오르며 빨갛게 되거나 파란색 혹은 검은색을 띰 * 심할 경우 물집·괴사·궤양 발생	* 젖은 신발과 양말은 벗어 제거하기 * 손상 부위를 따뜻한 물에 조심스럽게 씻은 후 건조시키기

※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 "한파대비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" 참고

겨울철 질식·미끄러짐 사고 예방

건설현장 갈탄 사용 시 질식위험 예방



* 양생 시 갈탄보다는 열풍기를 사용하세요.
*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을 사용할 경우
 -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, 충분한 환기, 보호구 착용

빙판길 미끄러짐 예방



* 미끄럼 방지용 안전화를 착용합니다.
* 작업시작 전 빙판이나 눈이 쌓인 곳은 제설작업을 실시하고, 모래 등을 뿌려줍니다.

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질병관리청

붙임 3 **한랭질환 예방 및 휴게시설 사전점검표**

한랭질환 예방 사전점검표



따뜻한 옷

▶ 보온 기능이 있는 의류, 장갑, 신발 착용 및 지도	☐ 적정 ☐ 개선 필요
▶ 머리와 귀를 덮는 모자 등을 착용 및 지도 *물이나 땀에 젖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여분의 양말 준비	

따뜻한 쉼터

▶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따뜻한 쉼터 설치 *쉼터에서의 화재 및 유해가스 중독 등 예방조치 실시	☐ 적정 ☐ 개선 필요
▶ 한파특보 발령 시 적절한 휴식 부여	
▶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관리 기준 준수 * (설치·관리 기준 준수) 크기, 온도, 위치 등 적정기준 준수 여부 확인	

따뜻한 물

▶ 깨끗하고 따뜻한 물 제공	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작업시간대 조정

▶ 한파 특보 발령 시 추운 시간대(오전 3시~9시)를 피해 작업시간대 조정	☐ 적정 ☐ 개선 필요
▶ 한파특보(주의보)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작업시간 단축	
▶ 한파특보(경보) 발령 시 추운시간대(새벽) 옥외 작업중지 또는 최소화	

응급조치 (119신고)

▶ 한랭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9신고 * 한랭질환 증상 및 예방조치, 응급조치 요령을 미리 알릴 것	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한랭질환 민감군 관리

▶ 한파특보 시 한랭질환 민감군 및 중작업 수행 노동자 중점 관리 - (민감군) 고혈압, 당뇨, 뇌심혈관질환, 감상선 기능저하, 고령자, 신규배치자 등 - (중작업) 형틀·철근·타설작업 등 건설현장에서 전신을 움직이는 작업, 중량물을 수작업에 의해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	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

2026-산업보건실-811

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 점검표



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

➲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여부	☐설치 ☐미설치

크기 최소 바닥면적과 천장까지의 높이

➲ 최소 바닥면적 6㎡ 이상, 바닥면에서 천장까지 높이 2.1m 이상	☐적정 ☐개선 필요
➲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하였는지 여부	☐적정 ☐개선 필요

위치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곳에 설치

➲ 휴식시간에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곳에 설치 * 작업장소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게시간의 20% 넘지 않는 곳에 위치	☐적정 ☐개선 필요
➲ 화재폭발, 유해물질, 분진 및 소음 노출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	☐적정 ☐개선 필요

온도·습도·조명·환기 적정 기준 준수

➲ 적정 온도(18~28도)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설치	☐적정 ☐개선 필요
➲ 적정 습도(50~55%)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 설치	☐적정 ☐개선 필요
➲ 적정 조도(100~200럭스)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 설치	☐적정 ☐개선 필요
➲ 창문 등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는지 여부	☐적정 ☐개선 필요

비품 구비 및 관리

➲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구비	☐적정 ☐개선 필요
➲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 구비	☐적정 ☐개선 필요
➲ 휴게시설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외부에 부착	☐적정 ☐개선 필요
➲ 관리 담당자 지정	☐적정 ☐개선 필요

목적 외 사용금지

➲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	☐적정 ☐개선 필요

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원 안전보건공단